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4.

발 의 자 : 안철수 · 김성원 · 김대식
이종욱 · 이상휘 · 유영하
임이자 · 김은혜 · 조지연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, 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바탕으로 적격자를 추천하고 근로계약과 취업교육 등을 거쳐 사업장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.

그러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제공받는 정보가 국적 · 나이 · 한국어능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, 해당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경험이나 기능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. 특히 기계 조작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제조업 등의 경우 업무내용과 근로자의 경력 · 기능이 맞지 않으면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, 사업주는 장기간 인력 공백과 취업교육비 · 대행수수료 · 보험료 등의 반복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음.

외국인근로자 역시 입국 전에 임금, 근로시간, 실제 작업내용, 근로

장소 및 숙소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워, 입국 후 예상하지 못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사업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관계가 조기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하고,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, 근로시간, 근로장소, 작업내용 및 숙소정보 등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이를 통해 사용자는 업무에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정확하게 채용할 수 있고, 외국인근로자는 실제 근로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채용 불일치와 조기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신설).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기능 수준”을 “업종별 근무경력, 직업훈련이력, 기능 수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수준, 근로시간, 근로장소, 작업내용, 숙소정보 등 외국인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) ① ~ ③ (생략)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.	제7조(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업종별 근무경력, 직업훈련이력, 기능 수준</u> ----- 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)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8조(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수준, 근로시간, 근로장소, 작업내용, 숙소정보 등 외국인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

② ~ ⑥ (생 략)	<u>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